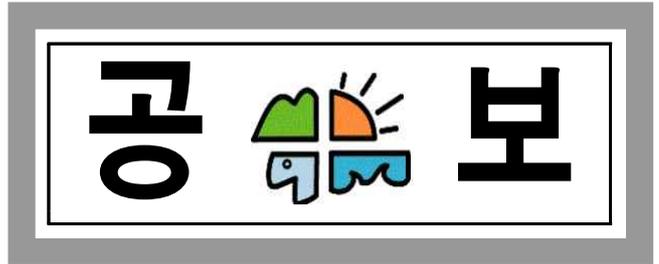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23호 2022년 10월 24일(월)

훈 령

- 속초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2

속초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훈령 제775호

속초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속초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속초시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속초시 소속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사고예방 책임 및 의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제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속초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특별히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안전관리를 위해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속초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속초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산업보건과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보건의)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보건의를 둔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와 보건관리자를 선임 후 추가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서의 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소집 및 회의성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은 회의에 불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④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재적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표결수가 동수일 때 위원장은 결정권이 없으며, 그 안건에 대하여 재합의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4. 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2.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장
3.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5.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3. 회의내용, 심의·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변경되는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3조(교육 실시방법) ①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 및 인터넷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대상별 안전보건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와 같다.

제14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자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관리감독자 교육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교육)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현업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제16조(채용 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현업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채용 시 교육은 사용부서에서 실시하며, 교육내용에 따라 시 분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현업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신규채용자 교육내용과 동일하다.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사용부서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 전환 등 필요시에는 시 본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특별교육)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현업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대상 및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제19조(직무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0조(교육 서류보존) 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관리

제21조(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초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방호장치) ① 관리감독자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기구

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표지) ①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의 안내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는 관리감독자의 책임 아래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표지의 훼손 및 임의 이동금지) ① 모든 안전표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훼손 또는 임의로 이동, 설치하지 못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설치된 각종 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설치된 표지물을 이동시키거나 내용 변경 또는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소속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표지물을 원상 복구하고 해당 소속 관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따른다.

제26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작업안전수칙을 작성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 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29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 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그것의 게시
3. 관리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

제32조(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 시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세부사항 등은 법 제125조 및 규칙 제186조부터 제190조에 따른다.

제33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은 규칙 제194조의2에 따른다.

제34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수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수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작업 전 건강 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를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5조(유해요인조사) ① 시장은 직원이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2.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직원이 근골격계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유해요인조사 시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경우에 직원과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8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재해발생현황을 총괄분석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매년 3월 중에 전 회계연도에 대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40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의 역할, 책임자지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을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조언하며, 위험성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유지·관리한다.

제42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9장 발주·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43조(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발주·도급 시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와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다.

제44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시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보건 조치 등) 시장은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6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47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